

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「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조례」의 개정으로 우리구의 심벌마크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[별표1]의 포상용 용지규격과 [별표2]의 기념휘장규격의 구 심벌마크 모양 변경

3. 관계법령

지방자치법 제9조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개정안은

2007. 5. 15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조례」의 개정으로 우리구 심벌마크가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표창장, 감사장, 기념휘장 등에 사용할 구 심벌마크를 바꾸려는 것으로

이는 우리구 구기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후속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.